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02
----------	-------

발의연월일 : 2024. 1. 17.

발 의 자 : 설 훈 · 송옥주 · 신현영
조승래 · 김영주 · 고민정
이병훈 · 민병덕 · 이용선
김병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되,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세대주나 가족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그런데 훈련 소집일 7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예비군대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

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사전에”를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전에</u>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① ----- ----- ---- <u>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u> ----- ----- -----, -----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